

2022년도
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
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
2차 신규지원 사업 설명

2022.5.



(재)충북지역사업평가단

1.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-주력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
2. 지역주력산업육성+(R&D) 충북지역 2차 지원계획
3. 유의사항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안내
4. 평가일정 및 신청방법

**1. 2022년도
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
-주력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**

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-지역주력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○ 사업내용

- 지역별로 여건·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**지역주력산업분야** 지역기업의 **고용창출형***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

* 고용의무조건 : 국비(지방비) 2억원 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(채용 후, 6개월 이상 고용 유지)

○ 추진체계

: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

- **주관연구개발기관** : 충북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
- **공동연구개발기관** :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

○ 신청자격

- **주관연구개발기관** :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**충북 지역에 사업장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**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,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

- **공동연구개발기관** : 충북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,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

- 「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」<별표 1>의 “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”의 “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-지역주력사업 개요

○ 공모방식 : 자유공모

- 충북 주력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

○ 지원규모 및 기간

- 지원기간 : 12개월(단년)
 - 단년도 지원과제 : 2022.7.1 ~ 2023.6.30.(12개월)

- 지원예산 : 2억원 이내

※ 지원규모 및 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연구개발비 부담비율

-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(지자체)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

구분	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
중소기업 (주관 또는 공동)	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% 이하*	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% 이상	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기타	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		필요 시 부담

* [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]에 따라 비율 산정

2. 지역주력산업육성+(R&D) 충북지역 2차 지원계획

지역주력산업육성(R&D)-충북지역 2차 지원계획

○ 지원대상

- **충북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이 주관하며,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 과제**
- **주력산업분야 중 지능형IT부품 산업 및 수송기계소재부품 산업에 해당**
- **2차 공고에는 '바이오헬스' 산업 지원 계획 없음**

○ 지원분야

- **충북지역 지역주력산업**

산업명	정의	중점 지원방향
지능형IT 부품산업	스마트화(지능화, 연결성, 융합성)의 실현에 필요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, 서브시스템 및 기존 제품(공정·장비 포함)과 서비스에 IT기술을 내재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	지능정보사회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반도체, 전자부품, 안전제어부품, 소프트웨어, 핵심장비 등의 품목 다양화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원
수송기계소재 부품산업	친환경 수송기계 소재, 부품 모듈 및 자율주행 센서부품 등 미래형 수송의 성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제조개발 관련 산업	전기차, 수소차,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관련 소재부품 및 이차전지 분야의 기술개발 및 그린수소산업과 연계를 통한 융복합 제품 개발 지원

지역주력산업육성(R&D)-충북지역 지원계획

○ 지원규모 및 기간

- 지원기간 : 12개월(단년)
 - 단년도 지원과제 : 2022.7.1 ~ 2023.6.30.(12개월)
- 지원예산 : 과제당 2억원 이내

○ 충북지역 지원예산

- (자유공모) 총 278백만원 (지방비)

주력산업	정부지원연구개발비(국비)	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(지방비)	합계 (백만원)
지능형IT부품산업	-	128	128
수송기계소재부품산업	-	150	150
합 계	-	278	278

3. 유의사항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안내

○ 고용의무조건

- 정부지원(국비)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(지방비)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
-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
-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,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)
※ '고용의무조건'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최종평가에서 "보통"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

○ 기술료 징수

- 최종평가 "완료"('우수', '보통', '미흡')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(주관·공동), 기술료 납부방식 : "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" 적용

○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 적용 대상 사업임

○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일부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
○ 시설·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·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(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)

○ 공고문 '[붙임1] 신청방법(제출서류)안내 및 유의사항' 의 '우대 및 감점 기준'에 따라 가·감점을 적용하되,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

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(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,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,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)의 경우,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·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로 적용

지원 제외 대상

○ 신청과제가 기개발·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에 **참여제한** 중인 자 또는 기업(또는 기관)

* 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,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

○ 현재 **연구책임자**로서 **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**

*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,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

○ 지역산업육성사업(R&D)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**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를 초과하는 경우**

수행중 과제수 (증기부 소관 R&D사업 기준)	신규 신청가능 여부	신규 수행가능 과제수
3개	불가	불가
2개	가능	1개
1개	가능	2개
0개	가능	3개

* 단,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, 중소기업R&D 역량제고, 연구기반활용(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), 공정품질기술개발(현장형 R&D), 중소기업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,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(R&D),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, 상용화기술개발사업(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), '19년까지 선정된 첫걸음협력R&D, 제품서비스R&D, 기술전문기업협력R&D, 공정·품질R&D, 구매조건부신제품R&D,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&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.

○ 「**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**」<별표 1>의 “**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**”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관리

지원 제외 대상

○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, 기관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**의무사항을 불이행**한 경우

- 중기부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실적 입력, 회수금,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 불이행

○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, 기관대표자 등의 **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**(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 예외)

*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(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신고된 재무제표)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
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,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대면평가 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연구개발기관, 기관 대표자, 연구개발책임자가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
-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에 따라 특수관계인,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컨소시엄 구성 불가(인적,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포함)

* 세부내용 및 예외사항은 공고문 또는 '[붙임3] 관련규정' 참고

선정평가 기준

○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 항목	평가지표
기술성 (25점)	○ 기술개발 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? 개발 내용이 기존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, 우수한가?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?
	○ 사업목표 및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?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가?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?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,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?
사업성 (25점)	○ 사업화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화 전략이 우수하고, 향후 시장에 대한 분석·예측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?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·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?
	○ 매출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,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?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,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? 신규시장 창출,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?
경영능력 (20점)	○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? 수행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? 총괄책임자, 참여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?
	○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? 최근 R&D 실적이 우수하고,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?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?
	○ 예산편성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개발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?
중점지원방향과의 부합성 (10점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제의 개발내용 및 추진방향이 지역주력산업별 중점 지원방향과 부합하는가 ?
일자리 평가 (20점)	○ 일자리의 양	○ 고용증가(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,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)
	○ 일자리의 질	○ 성과공유(미래성과공유 협약, 성과급 지급, 임금수준 상승,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)

※ **일자리평가**의 경우, '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'을 통해 점수 산출

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

- 사업목표 및 연구내용을 **명확**하게 설정
- **정량적 목표**, 기술수치 명확화
- 국내외 경쟁기술 및 기업과 **차별화(우위)**
- **시장규모, 가격동향, 수요처** 관련 자료 제시
- 그림, 도표, 사진, 샘플 제시를 통한 **가시적 내용** 제시
- 연구내용과 **조화**되게 사업비를 구성
- “**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**” 는 **다년도 과제**일 경우 필수 작성(단년 과제는 작성 불필요)
- SMTECH 전산접수 내용과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동일하게 제출
- 반드시 동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
-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중 각 항목의 작성요령(작성 point)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, 사업신청서 제출시에는 삭제

연구개발계획서 주요 작성 사항

O I-5. 최종목표 및 개발내용

5-1-2. 기술개발 목표

<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- 예시(과제명 : Nd-Fe-B계 자석개발)>

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¹⁾	단위	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²⁾	현재 기술수준 ³⁾	개발 목표치		평가방법 ⁴⁾	
				1차년도	2차년도		
자기적 특성	잔류자속밀도	Br(T)	12	1.21	1.21	1.22	KSC2501 JISC2501 공인시험성적서
	보자력(bHc)	kA/m	13	850	860	870	
	보자력(Hic)	kA/m	16	940	950	960	
	최대에너지적	kJ/m ³	9	240	260	280	
	Br의 온도계수	%/K	10	-0.123	0.123	-0.123	
	iHc온도계수	%/K	10	-0.6	-0.6	-0.6	
물리적 특성	밀도	Mg/m ³	10	7.35	7.35	7.4	
	전기저항	Ω·m	12	1.3	1.35	1.39	
	비커스 경도	-	8	6000	6000	6000	
	곡강도	MPa	5	240	240	245	
	인장강도	MPa	5	79	79	79	
			100				

※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예상되는 결과물(특허, 기술수준, 성능, 품질, 시제품, 도면, 기술문서 등)을 기재

주1)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, 회수율, 열효율, 인장강도, 내충격성, 작동전압,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,

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 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

주2)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.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

주3) 현재기술수준을 작성하여 개발목표치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

주4)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(예: KS..., JIS...), 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,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

연구개발계획서 주요 작성 사항

O I-5. 최종목표 및 개발내용

5-1-3. 경제적 성과목표(사업기간내)

<작성 예시>

기관명	1차년도(2022)		2차년도(2023)		합 계	
	매출 (억원)	고용 (명)	매출 (억원)	고용 (명)	매출 (억원)	고용 (명)
주관연구개발기관명	1	2	2	2	3	4
공동연구개발기관명	0.5	1	1	1	1.5	2

※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될 경제적 성과목표만 기재 (연구개발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치 제시, 간접매출 및 간접고용 포함)

※ 자율지표는 동 과제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 측정이 가능한 정량적, 정성적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재

(ex 고용, 수출액, 투자, 시작품제작, 특허출원, 공정개선, 네트워크 구축 등등)

※ 사업성과 산정 기준(안)

① R&D 관련 매출(수출)액

○ (R&D 관련 매출(수출)액의 정의) R&D과제 수행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발생된 제품(부품) 매출액 중 기술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의미함

○ 산정방법

$$\text{R\&D 관련 매출액} = \sum(\text{제품별 개발기술 적용 매출액} \times \text{기술기여도})$$

- * (개발기술 적용 매출액) 개발기술이 적용되어 생산·판매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
- * (기술기여도)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(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%~100% 사이 값 산정)

○ (증빙방법) 전자세금계산서, 세금계산서 매출내역, 부가세납입·수출실적증명원 &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매출 발생 기업 대표가 R&D관련 매출액 산정내역을 기재하여 공동 서명한 공문서

② 고용 창출

○ (고용창출의 정의) R&D 과제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를 의미함

○ (산정방법) R&D 과제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채용된 신규 연구개발 인력 외에 신규 생산인력, 신규 기타 (마케팅 등) 인력을 포함

$$\text{고용창출} = \sum(\text{신규 연구개발인력} \times \text{기술기여도(참여율)}) + \sum(\text{신규 생산인력} \times \text{기술기여도}) + \sum(\text{신규 기타 인력} \times \text{기술기여도})$$

* (기술기여도)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(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%~100% 사이 값 산정)

○ (증빙방법) 입사일과 현재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&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고용 창출기업 대표가 R&D과제수행의 관련성을 기재하여 공동 서명한 공문서

연구개발계획서 주요 작성 사항

○ Ⅱ-1. 사업화 목표 (1/2)

1-1-1. 사업화 목표

<작성 예시>

(단위 : 백만원, %)

기관명	사업화 성과	세부 성과지표	(2023)년 (개발종료 해당년)	(2024)년 (개발종료 후 1년)	(2025)년 (개발종료 후 2년)	(2026)년 (개발종료 후 3년)	(2027)년 (개발종료 후 4년)	(2028)년 (개발종료 후 5년)
A기업	기업 전체 성장	예상 총매출액(A)	1,000	1,100	1,200	1,300	1,400	1,500
	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	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(B)	100	200	250	300	400	500
		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(C) (C=B/A)	0.1	0.18	0.2	0.23	0.29	0.33

※ 목표로 제시한 매출액은 과제종료 후 실시하는 성과활용조사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며, **경상기술료 징수 근거로 활용** 및 목표 달성 시 후속과제 참여에 가점 부여

※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예상 매출액 및 점유비율과 해당 기술개발의 연관성 및 타당성 판단

※ 과제종료 후 최종평가 시 점유비율 최종 확정 예정

※ 사업화 목표의 정의 및 작성 요령

- 사업화 목표 :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객관적·체계적으로 평가·관리하기 위한 지표
- 예상 총매출액(A) :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등 파급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,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 후 5년간 기업의 총매출액 목표(추정치)를 제시
-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(B) : 개발기술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한 직접적인 매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,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 후 5년간 기술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목표(추정치)를 제시 (연구개발결과물이 서비스 등 제품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상품 매출액을 제시)
- **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(C)(C=B/A)** : 해당연도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이 예상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, 선정평가,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 기술료 산정·납부시 근거자료로 활용

* 예상 총매출액(A)과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매출액(B)은 점유비율(C)의 구체성,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치로서 활용

연구개발계획서 주요 작성 사항

○ Ⅱ-1. 사업화 목표 (2/2)

※ 예상 경상기술료의 정의

-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의 개념 : 완료 판정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(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)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되,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시 제시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곱하여 산정
- * 기존 경상기술료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산출하고 전문기관이 다시 검증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나, 매출 기반 약정기술료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 제시한 점유비율을 활용하여 산정하므로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절차 간소화 가능
- *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=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x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x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x 경상기술료율
- * [붙임3] 관련규정 내 “11.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련규정” 참조

연구개발비 산정 시 참고사항

○ Ⅲ. 2.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(1/2)

(단위 : 천원)

비목	항목		1차년도				2차년도				합계
	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
직 접 비	인 건 비	내부인건비(A)	현금								
			현물								
		외부인건비(B)	현금								
			연구지원인력인건비(C)								
	학생 인건비(D)										
	총 인건비(E=A+B+C+D)										
	연구시설· 장비비(F)		현금								
			현물								
	연구재료비 (G)		현금								
			현물								
	연구활동비 (H)		현금								
			현물								
	연구수당(I)										
	직접비 소계 (J=E+F+G+H+I)										
간접비(K)											
연구개발비 총액(L=J+K)											

※ 세목별 총액을 작성

- 1) 인건비 : 중소기업(주관·공동)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, **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**
- 2) 연구지원인력인건비(C) : 비영리기관만 해당(행정 지원인력 연구수당 계상 불가, 직접비에서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)
- 3) 연구활동비(H) :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, **외부 전문기술 활용비(직접비의 40% 이내)**, 회의비, 출장비, 소프트웨어 활용비, 연구실 운영비, 연구인력 지원비, 종합사업관리비, 그밖의 비용
- 4) 연구수당(I) : **수정인건비(A+B+D)의 20% 이내로 산정**
- 5) 간접비(K) : 비영리기관-연구개발기관별 **간접비 고시비율**을 적용(필수), **영리기관-직접비(현금)의 10% 이내 산정**

※ 상세 내용은 공고문의 [붙임1]-[양식1]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[붙임3]-04.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참조

연구개발비 산정 시 참고사항

○ Ⅲ. 2.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(2/2)

-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황표 (연차별로 작성)

(단위 : 천원)

인력 구분	성명	직위 (학생일 경우 학생 기재)	내. 외부 및 지원 구분*	신규/기존	급여총액 (A)	참여기간 (B, 개월)	참여율(% (C))	합 계 ((A/12)×B×(C/100))		
								현금	현물	계
참여연구원 (기존)	홍길동	소장	내부	기존						
			외부	-						
			소계(D)							
참여연구원 (신규)	강감찬	교수 학생	내부	신규						
			소계(E)							
			외부	신규						
비영리 지원 인력	강감찬	선임행정원	지원	신규						
			소계(F)							
			총액(G=D+E+F)							

※ 급여총액(A) : 당해년도 급여총액 기준. 기관부담금(4대보험, 퇴직충당금) 포함

※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않은 연구원(무급연구원)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

※ 비영리 지원인력 :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허용.

단, 행정지원 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 불가, 직접비에서 인건비 계상한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

- 학생인건비 현황표 (연차별로 작성)

성명	과정명	학과/학부명	월 급여	참여 기간 (개월)	인건비계상률 (%)	합계 (단위:천원)
	박사 과정		2,500			
	석사 과정		1,800			
	학사 과정		1,000			
합 계						

※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(재학중인 학생만 기재)

※ 박사 후 과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가 아닌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

※ 인건비계상률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 인건비계상률을 고려하여 100% 이내에서 산정함

연구개발비 산정 시 참고사항

-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**10% 이상 참여율**(인건비계상률)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
- 중소기업(주관·공동) 참여연구자 **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**
 - 「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」 제5조(인건비 현금계상)
- 중소기업(주관·공동)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, **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이 원칙**
- 간접비 내에서 「기술자료 임치제도*」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
 - *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(기술자료)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,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 함
 - * 별도의 「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」 참고
- 정부출연기관, 대학, 기타 비영리기관, 영리기관 등 **기관유형별로 사업비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이 상이**
 -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공고문 [붙임3] 관리규정) 참고

○ 지원근거

법령	관련 조항
국가균형발전특별법	▸ 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
○ 관련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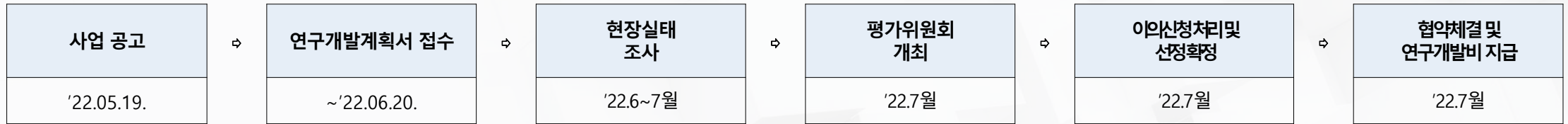
구분	관련 규정
법	▸ 국가연구개발혁신법
시행령	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
시행규칙	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
고시	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	▸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
	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	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
	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	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
	▸ 연구개발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
	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
▸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	

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**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**

4. 평가일정 및 신청방법

평가일정 및 신청방법

○ 평가절차 및 일정



○ 신청기간

- 공고기간 : 2022.5.19.(목) ~ 2022.6.20.(월)
- 접수기간 : **2022.6.3.(금) 9:00 ~ 2022.6.20.(월) 18:00 까지**

○ 신청방법

- 온라인접수(홈페이지 입력) → 신청서류 제출(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)
 - *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“제출하기”를 클릭한 후 “제출확인” 확인 필요(접수마감일 기준으로,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)
 - *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시 업로드,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
- 온라인접수처 : <http://www.smtech.go.kr> (문의처 : 국번없이 1357)
 - *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2~3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
 - *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·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
 - *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

신청 시 제출서류

○ 신청서류 양식 확인 : SMTECH(www.smttech.go.kr) → 정보마당 → 알림마당 → R&D사업 공고 → 사업공고 목록보기 → (자유공모)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-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 공고

○ 사업신청 관련 제출 서류 (양식에 작성하여 업로드 및 온라인 제출)

연번	제출서류	시스템 업로드		비고	참고사항
		구분	내용		
1	연구개발계획서	필수	1부(원본, 주관)	[양식 1]	본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및 별첨 양식 날인하여 온라인 제출
2	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참여의사 확인, 과제 참여 연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	필수	1부(연구개발기관별)	[양식 2]	
3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필수	1부(연구개발기관별)	[양식 3]	
4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동의서	필수	1부(연구개발기관별)	[양식 4]	
5	선정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 확인서	해당시 (미제출시 가점 없음)	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수	[양식 5]	가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필수 제출
6	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	필수	1부(영리기관별)	[양식 6]	연간 정부/지자체지원 연구개발비 2억원당(이내) 1명 이상 신규채용 계획 제출 필수

○ 사업신청 관련 제출 서류 (서류 발급 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)

연번	제출서류	시스템 업로드		비고	참고사항
		구분	내용		
1	최근년도 결산 확정 재무제표 (표준재무제표증명)	필수	1부(영리기관별) (표준재무제표증명)	-	-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없는 기업 또는 기관일 경우 회계법인, 세무서 등에서 공인된 재무제표 별도 제출 - 최근년도(2021) 결산(확정) 재무제표 제출하되 '21년 이후 설립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 '21년 결산(확정) 재무제표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
2	최근년도 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	필수	1부(연구개발기관별)	-	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
3	사업자등록증	필수	1부(연구개발기관별)	-	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
4	중소기업 확인서	필수	1부(영리기관별)	-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) 발급 (최근 6개월 이내)

*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

*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

* 신청자(기업,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
감사합니다.

 (재)충북지역사업평가단